

학술연구 활동지원 장려금 지급 규정

제정 1994. 5. 23.

제18차 개정 2025. 7. 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전임교원에게 학술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학술연구 활동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9.1., 2019.03.08)

제2조(지급범위 및 신청) ① 장려금은 전임교원이 본교 재임 중에 활동한 학술대회 주제발표, 논문게재, 저서출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각각의 장려금 지급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학술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9.03.08., 2023.11.02.)

②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교원은 지급 기준일 내에 발행된 실적을 학술연구 활동 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증빙자료를 제출(또는 교수업적평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단, 교내연구비 결과물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조 개정 2000.9.1, 2003.5.23) (개정 2007.10.29., 2019.03.08., 2019.06.25., 2025.2.17., 2025.7.15.)

제3조(학술대회 주제발표 장려금) 전임교원이 국제 또는 전국규모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할 경우 학술연구 활동 장려금 지급기준표(별제 제2호 서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조 개정 2000.9.1, 2003.5.23) (개정 2007.10.29., 2019.03.08)

제4조(논문게재장려금) 전임교원이 교수업적평가규정 별표2 연구영역 평가항목 및 인정기준에 따른 국제 저명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외전문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예능작품을 발표 또는 전시할 경우 학술연구 활동 장려금 지급기준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 2015.05.12., 2016.01.12., 2019.03.08., 2025.2.17., 2025.7.15.)

제5조(저서 출판 장려금) 전임교원이 외국 또는 국내에서 학술저서, 역서의 출판물을 발간할 경우 학술연구 활동 장려금 지급기준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 2015.05.12., 2019.03.08.)

제6조(논문 게재 지원금) 전임교원이 교수업적평가규정 별표2 연구영역 평가항목 및 인정기준에 따른 국제 저명학술지(단, 등재후보지는 제외한다.)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논문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한 경우 학술연구 활동 장려금 지급기준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논문 게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정 2025.2.17.)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연구비 지침과 기획01003-574(1993.12.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논문게재장려금 지급표는 시행일 이후에 발행된 학술지에 한하여 적용하며 이전에 발행된 학술지는 종전기준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논문게재장려금 지급표는 시행일 이후에 발행된 학술지에 한하여 적용하며 이전에 발행된 학술지는 종전기준에 의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행하여진 학술연구 활동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점) 제4조 제2항은 제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제5조(정기총회 참가 장려금)는 2003.5.31일 까지 유예기간을 둔다.

부칙 (기획예산과-1133, 2007.10.30.)

이 규정은 2007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221, 2008.11.12.)

이 규정은 2008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28, 2010.1.11.)

이 규정은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294, 2015.05.12.)

이 규정은 2015년 0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26, 2016.01.12.)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75, 2018.04.03.)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4월 03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학술연구 활동 장려금 지급기준표(별지 제2호 서식) 중 논문 및 저서에 대한 장려금 계산 적용비율 지침은 2018.03.01. 게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팀-139, 2019.03.08.)

이 규정은 2019년 03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330, 2019.06.25.)

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2293, 2023.11.02.)

이 규정은 2023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418, 2025.02.17.)

이 규정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1548, 2025.07.15.)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이후 게재 및 발표한 학술연구 활동 실적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0.1.4. 2015.05.12. 2016.01.12., 2019.03.08., 2019.06.25., 2025.2.17., 2025.7.15.)

학술연구 활동 장려금 지급신청서									
신청일자 :		구 분			결재	담당	팀장	처장	
접수일자 :		☐ 교외연구비 결과물 ☐ 연구년제 결과물 ☐ 기타 개별연구 결과물							
소속 학과					성명	(인)			
☐ 논문 게재 <제출서류> -학회지(표지,발간일,목차) 사본 1부. -별쇄본 1부. -국제저명: 증빙자료 ▶SCI급 검색:출력물 ▶ISSN 표기:출력물 ▶IF등급 검색:출력물 * 제출서류는 업적평가에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명				발표구분	☐ 단독 ☐ 공동 (총 명) 책임/일반			
	학술지명	권 호 페이지 -			학술지 구분 (해당란 기재)	☐ 국제저명 (SCI / SCI-E AHCI / SSCi) -A등급($10 \leq IF$) : () -B등급($5 \leq IF < 10$) : () -C등급($1 \leq IF < 5$) : () -D등급($IF < 1$) : () ※IF(Impact factor)를 ()괄호 안의 해당란 √ 표기			
	학회명					☐ 국내전문(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 국제저명(SCOPUS)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 국외전문학술지			
	게재일자	년도, 월, 일				※ ISSN : - - - - - -			
☐ 전시·발표(에너지) <제출서류> -작품집 및 행사포스터 1부. -국제전시·발표:증빙자료[필수] (출입국 도장이 있는 여권 사본) * 제출서류는 업적평가에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발표 주최기관				전시회명				
	작품명				규모	☐ 국제전 입상 ☐ 국제규모 전시 (지역) ☐ 국내전 입상 ☐ 국내전 초대발표 및 전시 ☐ 전국규모전 및 초대전 ☐ 해외여행허가신청서 제출 (√표기제출 , 미제출)			
	전시·발표 일								
	전시발표 장소	국가명							
		지역/장소							
☐ 학술대회 주제발표 <제출서류> -초청장(발표자명단,발표일,행사진행표 등) 1부. -발표원고사본 1부. (발표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제출) -국외발표:증빙자료[필수] (출입국도장이 있는 여권사본) * 제출서류는 업적평가에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최기관				학술대회명 (주제)				
	개최일시				발표연구과제명				
	개최장소	국가명			규모	☐ 국제학술회의(지역) ☐ 국내학술회의 ☐ 해외여행허가신청서 제출 (√표기: 제출 , 미제출)			
		지역/장소							

학술연구 활동지원 장려금 지급 규정

☐ 저 역 서 출 판 <제출서류> -저서 1권 [필수] * 제출서류는 업적평가에 업로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저 서 명			종 류	☐ 국제학술저서 ☐ 저 서(공저포함) ☐ 초중등교과서 ☐ 역서
	발 행 처				
	발행일자			구 분	☐ 단독 ☐ 공동 (총 명) 학 회 명
☐ 논문 게재료 지원 <제출서류> -학회지(표지, 발간일, 목차) 사본 1부. -별쇄본 1부. - 국제저명 : 증빙자료 ▶SCI급 검색:출력물 ▶ISSN 표기:출력물 -학회발행 논문게재료 납부 영수증 원본 -이체확인증(해외송금 영수증) * 제출서류는 업적평가에 업로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논 문 명			발표구분	☐ 단독 ☐ 공동(주저자, 교신저자)
	학술지명			학술지 구분 (해당란기재)	☐ 국제저명 (SCI/ SCI-E/ AHCI/ SSCI) ☐ 국내전문(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 국제저명(SCOPUS)
		권 호	페이지 -		
	학 회 명				
	게재일자	년도,	월,	일	ISSN
입 금 계 좌 (본인 실명 계좌)	은행, 계좌번호				
지 급 금 액 (교무·연구팀 확인란)	산 출 근 거				
	금 액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8.11.12, 2010.1.4. 2015.05.12. 2016.01.12.,2018.04.03., 2025.2.17., 2025.7.15.)

학술연구 활동 장려금 지급기준표

구 분	장려금 지급액			비 고	
	내 역		금 액		
논문게재	국 제 저 명 학술지	A등급 (10≤IF)	10,000,000	1. 국제저명학술지는 SCI, SCIE, A&HCI, SSCI임. 2. IF수치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 3. AHCI, SSCI는 IF를 최하 3으로 인정 4. ISSN번호가 부여된 경우만 인정 * 공동연구자인 경우에는 장려금 계산 적용비율(%) 지침에 의하여 지급	
		B등급 (5≤IF<10)	5,000,000		
		C등급 (1≤IF<5)	3,000,000		
		D등급 (IF<1)	2,000,000		
	한국연구재단, SCOPUS 등재 학술지		1,200,000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국외전문학술지		600,000		
학술대회 주제발표 (국내·외 포함 연 1회 지급)	국 제 학술회의	구두 발표	500,000	1. 발표자에 한함. 2. 학회발표 논문을 단독이 아닌 2인 이상 공동으로 발표 했을 경우 발표자 1인만 지급 3. 국제학술회의의 국내발표인 경우 250,000원 지급	
		포스터 발표	300,000		
	국 내 학술회의	구두 발표	200,000	1. 발표자에 한함. 2. 1인이 해당 학회발표에 여러 논문을 발표했다하더라도 논문수와 관계없이 해당 개회학회 1회만 지급 3. 학회발표 논문을 단독이 아닌 2인 이상 공동으로 발표 했을 경우 발표자 1인만 지급(발표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제출)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주제발표만 신청가능	
		포스터 발표	100,000		
지역서출판 (개정판 불인정)	국제 학술저서		2,000,000	▶ 전공 관련 저서만 인정 (참고서 등 제외)	▶ 다수가 다수의 항목을 묶은 책이 아니고 소수의 저자가 전문적 항목을 심도있게 저술한 책으로 전공에 해당하는 전문가가 사용하는 서적 (정식출판사의 ISBN을 부여받은 서적)
	저서 (공저 포함)	1,500,000	▶ 전공 관련 저서만 인정 (참고서 등 제외)	▶ 다수가 다수의 항목을 묶은 책이 아니고 소수의 저자가 전문적 항목을 심도있게 저술한 책으로 전공에 해당하는 전문가가 사용하는 서적 (정식출판사의 ISBN을 부여받은 서적)	
			▶ 강의용 교재	▶ 강의 자료를 그대로 제본한 것이 아닌 정식출판사의 ISBN을 득한 정식의 강의용 교재로서 사용하는 서적(ISBN을 부여받은 전공과목의 교과서 포함)	
			▶ 초·중등 교과서		
	역서		1,000,000		
논문 게재료 지원 (각 1회 지급)	SCI(E), SSCI, A&HCI		300,000	30만원 이내 실비 지급(교내·외연구비 결과물 제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SCOPUS		200,000	20만원 이내 실비 지급(교내·외연구비 결과물 제외)	

※ 적용시점 : 2025. 01. 01 이후부터 적용함.

(개정 2015.05.12. 2016.01.12. 2018.04.03., 2025.2.17.)

학술연구 활동 장려금(예능계) 지급 기준

구 분	장려금 지급액			비 고
	내 역		금 액	
전시, 발표 (국내·외 포함 최대 연 3회 지급)	국제	국제전 입상	1,500,000	1. 국제전은 3개국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2개국의 경우 전국규모전에 적용함. 2. 국제전의 국내발표는 국내전 초대 발표 및 전시회에 준하여 지급함 3. 연간 1인 1회 지급하며, 1회 이상의 국제발표는 200,000원 지급함. 다만, 국제전 입상은 횟수에 제한 없음.
		국제규모 초대발표 및 전시회	1,000,000	
	국내	국내전 입상	700,000	1. 국내전은 대한민국미술대전, 대한민국공예대전, 대한민국산업디자인 전람회임. 2. 전국규모전 및 초대전은 업적평가 규정 별표2-2 예능계전람회 현황 및 분류표 적용 3. 연간 1인 2회 지급함. 다만, 국내전 입상은 횟수에 제한 없음.
		국내전 초대발표 및 전시회	500,000	
		전국규모전 및 초대전		

※ 적용시점 : 2025. 01. 01 이후 공연, 전시, 발표부터 적용함.

장려금 계산 적용비율(%) 지침

장려금 계산 적용 지침				
구분	논 문		저서,공저,역서	비 고
	주저자	공동저자		
단독	100%	-	100%	<논문 인정환산율>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 : $2/(n+1)$, 공동저자 : $1/(n+1)$로 하며, n은 참여 저자수로 총 10명 이상일 경우 n=10으로 처리, % 값이 정수가 되도록 올림 <저서 인정환산율> $1/n$로 하며, n은 참여 저자수로 총 10명 이상일 경우 n=10으로 처리, % 값이 정수가 되도록 올림 <용어의 정의> 1. 저서 :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전공분야의 연구저작물로 정식출판사의 ISBN이 부여되어 일반에게 공개된 것 2. 공저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집필한 저서(단, 단체명의로 출판물은 제외하며, '000저' 또는 '000공저'라고 표시된 것만 인정) 3. 역서 : 어떤 언어로 된 글을 다른 언어의 글로 옮겨 출판한 것으로 표지등에 "원저자"와 "원제목"이 나타나야 함 ※ 1) 저서(국내외 전문서적, 강의용 교재), 공저, 역서 : 도서가격이 있는 것만 인정함 2) 실습용 교재, 부교재, 문제집, 총서, 편저서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2명	67%	34%	50%	
3명	50%	25%	34%	
4명	40%	20%	25%	
5명	34%	17%	20%	
6명	29%	15%	17%	

※ 적용시점 : 2018. 03. 01 이후 게재분부터 시행함.